

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

제안설명

☐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!

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미경 위원입니다.

☐ 본 위원이 김영한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94호

「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☐ 이 제정안은,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청소년의 활동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, 이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.

잘 아시다시피,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교육환경은 지나치게 입시 위주이고, 또 한편에서는 청소년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동 장소의 절대적 부족 등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.

따라서,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, 수련활동을 비롯한 문화활동,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, 이의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.

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(안 제3조)
-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·운영할수 있도록 하며(안 제4조)
- 청소년거리의 조성 및 청소년 활동의 날의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